

#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

수원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 속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「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」을 시행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8일  
수원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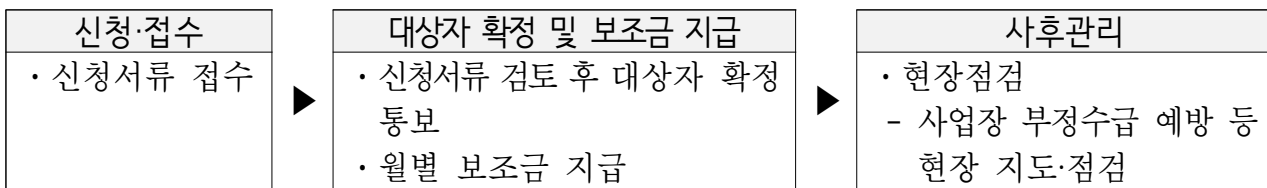
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
- 나. 지원대상 : 2025. 1. 1. 이후 수원시민(만19세 이상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
- 다. 지원규모 : 80명 ※ 1사업장당 최대 3명 지원
- 라. 지원금액 :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씩, 최대 6개월간)
- 마. 지원기간 :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그 이후 고용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

(예시) 2025. 1. 2.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7월부터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 지원

## 2.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

가. 지원절차



## 나. 지원요건

-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며 종사자 수가 50인 미만인 제조업종 중소기업
  - (소재지 및 업종)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및 업태(제조업) 기준
  - (종사자 수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
  - ※ 본사가 타지역에 있으나 수원시에 종된 사업장 및 지사, 영업소 등으로 분류된 경우 가능
- 2025. 1. 1. 이후 수원시민(채용일 현재 만19세 이상)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
  - (고용 및 수원시민 자격)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수원시 주민등록 유지
  - (고용조건)
    -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(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 제외)
    - 주 40시간 근로원칙
  - ※ 월별 실근무일수가 15일 이하(휴일 포함)이면 그 월은 고용유지 의무기간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※ 계약직(기간제근로자 등)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 기준
-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
- 기업당 3명까지 지원

## 다. 제외대상

- 1인 1사업장의 대표(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)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 대상자
-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(또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)에서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※ 병역복무, 출산휴직 등 특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
- 보조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소재지 및 주소지가 수원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,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·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,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등 보조금 지급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- 기타 수원시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
라. 지급방법 : 사업장(대표자) 명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(계좌이체)

### 3. 신청·접수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5. 9. 1.(월) 09:00 ~ 12. 15.(월) 18:00 까지

※ 선착순 접수이며 접수기간 중 목표인원(80명) 달성시 사업 종료

나. 신청대상 : 2025. 1. 1. 이후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기업

다. 지원대상기간 : 신청시까지의 고용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기간(6개월)을 제외한 고용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

라. 신청시기 : 고용유지 의무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 기간에 대하여 월별 신청 또는 일괄 신청

※ 최대 지원가능기간인 고용유지 의무기간 이후 6개월차 급여 지급 후 1달이내까지 신청 가능

(예시 1) 2025. 1. 2.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한 경우 9월 중 7월부터 8월까지의 고용보조금(2개월분) 신청하고, 그 이후 계속 고용에 대하여 월별 신청

(예시 2) 2025. 1. 2.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한 경우 12월 중 7월부터 11월까지의 고용보조금(5개월분) 일괄 신청

※ 근로자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'26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.

마. 접수방법 : **새빛톡톡 온라인 신청접수**

- 새빛톡톡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

※ 새빛톡톡(<https://www.suwon.go.kr:22834/mpropose/index.do>) 회원가입 후 로그인

※ 새빛톡톡 > 신청접수 > “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” 게시물 검색 후 업로드·제출

바. 신청서류 : **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조**

### 4. 제출서류

구 분	서 류 명
신청서류	①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.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 1부. ③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. ④ 사업주 확인서 1부.
증빙서류	⑤ 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사본 1부.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. ⑦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이력 최근 1년이내) 1부. ⑧ 사업주(대표이사)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구 분	서 류 명
증빙서류	⑨ 지원금 입금통장(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의) 사본 1부. ⑩ 근로계약서 사본 1부. ⑪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. ⑫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(현취득자) 1부. ⑬ 사업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유효기간 내) 각 1부. ⑭ 월별 급여명세서 및 입금 내역서(채용월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일까지) 1부. ⑮ 출근기록부 사본(수기 작성본의 경우 사업주, 근로자 서명 필수) 1부. ⑯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 1부.

- ※ 최초신청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모두 제출하며, 그 다음달 신청시부터 보조금 신청서(서식 1) 및 월별 급여지급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(증빙서류 ⑭, ⑮)만 제출함.
- ※ 주민등록초본, 사회보험 확인서류 등 발급서류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임.
- ※ 신청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(시정소식) 및 새빛톡톡(신청접수)에서 다운로드 가능함.

## 5. 기타사항

- 가.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
- 나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선정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음.
- 다. 공고문에 미기재 사항은 수원시 고용창출 보조금 지급 계획 및 수원시의 해석에 따름.
- 라.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**6. 문 의 :**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☎ 031-5191-3227, 3801)